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각종 보고의 의무 삭제 (안 제7조)

가. 개정 이유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(보고의 의무) 제1항 개정(제2·5·6호 삭제*)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(주소변경 등의 보고) 개정
- * 제5호(단체적 계약의 체결) '16.1.27일 개정시 삭제, 제2호(주소의 변경)·제6호(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) '22.11.15일 개정시 삭제

나. 개정 내용

-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(주소변경 등의 보고) 제1항(주소 변경 보고), 제3항(단체적 계약 보고), 제4항(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보고) 삭제
- 조항 삭제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주무관청 보고와 관련한 준용조항 문구 수정
(현행)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→ (수정) 제1항을 준용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주소변경 등의 보고) ① 조합,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주소변경보고서 1통을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7조(주소변경 등의 보고) <삭제>
② 조합,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선임(選任)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	① (<u>현행 제2항과 같음</u>)

<u>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</u> <u>2.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</u> <u>3.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(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)</u> <u>③ 조합,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 계약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조합,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원(회원)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⑤ 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조합,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”는 “중앙회”로, “중앙회 회장”은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본다.</u>	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② 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조합,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”는 “중앙회”로, “중앙회 회장”은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본다.</u>
--	--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도한 보고의무 폐지를 통한 운영상 부담 경감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